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우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5460

발의연월일: 2022. 4. 29.

발 의 자:정우택·권명호·김정재

박성민 • 박성중 • 송석준

유경준 • 윤창현 • 이종배

조경태 · 조수진 · 최재형

태영호 • 황보승희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할 때 6천만원, 1억 5천만원, 3억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나누어 누진세율을 적용하고,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할 때에도 주택공시가격에 따라 상한 비율을 차등하여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주택 가격을 비롯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해왔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「지방세법」 전부개정 이후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과세표준 구간의 기준은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으며, 최근 주택 가격의급등으로 인한 공시가격 현실화로 국민들이 느끼는 보유세 부담이 큼.

이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구간을 물가 상승에 맞추어 조정하고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의 상한 비율을 100분의 130에서 100분의 115로 낮추려는 것임(안 제111조제1항

제3호나목 및 제122조제3호).

법률 제 호
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과세표준	세 율		
1억2천만원 이하	1,000분의 1		
1억2천만원 초과	120,000원+1억2천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1.5		
3억원 이하	120,000 0 1 1 2 0 0 0 0 1,000 0 1 1.0		
3억원 초과 6억원 이하	390,000원+3억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2.5		
6억원 초과	1,140,000원+6억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4		

제122조제3호 중 "100분의 130을"을 "100분의 115를"로, "100분의 130에"를 "100분의 115에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과세표준 및 세부담의 상한에 관한 적용례) 제111조제1항제3호 나목 및 제1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 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제111조(세율) (① 자]산세 :	는 겨	1110
조의 고	가세표	준에	다음	각	호의
표준세	율을	적용	하여	계	산한
금액을	그 세	액으	로 한	다.	

행

혅

- 1. 2. (생략)
- 3. 주택

가. (생략)

나. 그 밖의 주택

과세표준	<u>세 율</u>
6천만원 이하	<u>1,000분의 1</u>
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	60,000원+6천만원 초과금액 의 1,000분의 1.5
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	195,000원+1억5천만원 초과 금액의 1,000분의 2.5
<u> 3억원 초과</u>	570,000원+3억원 초과금액 의 1,000분의 4

4. • 5. (생략)

②·③ (생 략)

제122조(세 부담의 상한) 해당 재 제122조(세 부담의 상한) ------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 (제11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 을 말한다)이 대통령령으로 정

제111조(세율) ①
1 0 /되케미 키 0)
1.・2. (현행과 같음)

정

개

안

3. ----

가. (현행과 같음)

나. -----

과세표준	세 율
1억2천만원 이하	<u>1,000분의 1</u>
1억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	120,000원+1억2천만원 초 과금액의 1,000분의 1.5
<u>3억원 초과</u> <u>6억원 이하</u>	390,000원+3억원 초과금액 의 1,000분의 2.5
6억원 초과	1,140,000원+6억원 초과금 액의 1,000분의 4

4. • 5. (현행과 같음)

② • ③ (현행과 같음)

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 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 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 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. 다 만, 주택[법인(「국세기본법」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) 소유의 주택 은 제외한다]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 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.

- 1. 2. (생략)
- 3.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: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

,
1.•2. (현행과 같음)
3
<u>100분의 115</u>
<u>를100분</u>
<u>의 115에</u>